
산업입지정책동향

[2022년 하반기]

2022. 12.

본 자료는 2022년 말 현재 산업입지 관련 현안 및 정책동향을 안내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 투자종합상담실 한국산업단지공단 파견관(☎ 02-3497-1956)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 차



I. 주요 입지 정책 동향	1
1.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선정	1
2. 뿌리산업 특화단지 확대 및 고도화	2
3. 새만금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최초 지정 ..	3
4. 공장 신·증설 관련 모래주머니 규제 제거 추진	4
5.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 지정이 쉬워진다	5
II. 주요 법령 동향	6
1. 산업집적법 시행령	6
2. 산업입지법 시행령	7
3. 산업입지법	7
4.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7
5.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8

I. 주요 입지 정책 동향

1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26일 개최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올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5개 지역을 예비 선정
 - 지역선정 공모에 신청한 7개 시·도의 혁신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불국가산단 지역’, ‘대전산단 지역’, ‘천안제3일반산단 지역’, ‘청주산단 지역’, ‘포항국가산단 지역’ 등 5개 지역을 선정
 - 또한,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된 5개 지역의 거점산단인 대불국가산단, 대전산단, 천안제3일반산단, 청주산단, 포항국가산단을 신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

< 산단 혁신계획 주요 내용 >

	대불국가산단지역	대전산단 지역	천안제3일반산단 지역	청주산단 지역	포항국가산단지역
거점산단	대불국가산업단지	대전산업단지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청주산업단지	포항국가산업단지
연계지역	영암 삼호일반산단, 해남 화원일반산단, 목포 삼진일반산단	대덕연구개발특구, 충남대, 한남대	인주일반산단, 아신테크노밸리일반산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옥산산업단지	경주 외동일반산단, 영천 첨단부품 소재산업단지, 포항철강산업단지
주력산업	친환경 선박, 해상풍력	차세대무선통신융합, 지능형 로봇, 바이오, 메디컬, 첨단 융복합 화학소재	자동차부품산업 중심 미래차 소부장 전환·융합 가능한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	지능형IT부품, 바이오 헬스, 수송기계소재 부품	철강, 자동차, 금속소재 등
비전	친환경 중소형 선박과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허브로 도약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K-제조업의 신성장 거점 구축	미래차 소부장 그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글로벌 전진 기지로 도약	지능형 융합기술을 통해 소부장 산업 글로벌 기술거점 구축	그린철강 기반 청정 금속소재 산업 허브 구축
핵심사업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산단 산재예방 통합지원센터, 스마트 공동물류 플랫폼 등 구축	에너지급저축 인프라 구축,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R&D, 노후산단 재정비 등	대중소 상생형 공동 훈련센터 지원, 미래 모빌리티 기술창업 타운 조성 등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R&D,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스마트 시티 솔루션 확산 등	저탄소 철강산업 공정 기술 지원, 저전력 지능형 IoT 물류 부품 상용화 기반구축 등

2

뿌리산업 특화단지 확대 및 고도화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산 테크노밸리 등 7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고, 울산 조선해양산업 특화단지 등 12개 단지를 특화단지 지원대상으로 선정
 - 산업부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경쟁력있는 뿌리일터 조성을 목적으로 10개 이상 뿌리기업이 집적(또는 집적예정)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 '13년 4개 단지 지정 이후 매년 4~5개 단지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전국 45개 단지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지정(7개) >

단지명	위치	업종	주요내용
거제 옥포 조선해양 특화단지	국가산단(옥포)	용접·표면처리	상생형(대우조선)
거제 죽도 조선해양 특화단지	국가산단(죽도)	용접·표면처리	상생형(삼성중공업)
강릉 뿌리산업 특화단지	일반산단(강릉)	적층제조	차세대 업종
아산테크노밸리 특화단지	일반산단(아산테크노)	정밀가공·금형 등	신규지역
부산 금형산업공동혁신 특화단지	일반산단(화전)	금형	지역산업 연계
대전 평촌 차세대 융합 특화단지	공업지역	정밀가공	신규업종·도심형
경기 백학통구 뿌리산업 단지	일반산단(백학통구)	주조·표면처리 등	신규지역

- 산업부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중 우수단지를 지정하여 공동시설 구축 및 혁신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대중소상생(울산 조선해양), 청년 친화(대구 표면처리), 물류 효율화(광주 금형특화), 공동브랜드 조성(익산 주얼리) 등 다양한 혁신활동 집중지원을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12개) >

유형*	단지명	위치	업종	사업내용
선도	울산 조선해양 특화단지	국가산단(미포)	용접·표면	(시설·활동) 대중소상생
	대구 표면처리특화단지	국가산단(대구2)	표면처리	(시설·활동) 복합지원센터
일반	안산 도금협동화단지	국가산단(반월)	표면처리	(시설) 공동폐수처리시설
	영암삼호 뿌리산업 특화단지	일반산단(삼호)	용접·표면	(시설) 휴게실·이동식화장실
	부산 녹산 표면처리특화단지	국가산단(녹산)	표면처리	(시설) 공동폐수처리시설
	부산 청정도금사업협동조합	국가산단(녹산)	표면처리	(시설) 공동폐수처리시설
	충주 뿌리산업특화단지	일반산단(충주)	금형·표면 등	(활동) 뿌리수요기업 연구회
	익산 주얼리 특화단지	일반산단(익산3)	표면처리	(활동) 공동브랜드
	순천 뿌리산업특화단지	일반산단(해룡)	용접·표면 등	(활동) 공동구·판매시스템
	전남광주 금형특화단지	일반산단(평동)	금형	(활동) 밀크런 공동물류
	구미 금형산업 특화단지	국가산단(구미1)	금형	(활동) 공동마케팅
	부산 친환경차 부품 특화단지	일반산단(부산과학)	금형·용접 등	(활동) 공동구·판매시스템

* 선도형 - 3년, 20억 원 / 일반형 - 단년, 6억 원 내외

3

새만금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최초 지정

-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7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5·6공구)'를 국내 최초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
 - '스마트그린국가시범단지'는 조성 단계의 신규 산단을 에너지 사용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기업 생산지원 인프라 구축, 쾌적한 정주여건 등 스마트그린 요소가 종합 구현된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성공모델을 제시하여 전국적으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
 - 새만금 국가산단은 지난해 4월 스마트그린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최초 지정
 -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은 2040년까지 RE100 산업단지 실현을 목표로 단기적으로는 총 180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상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 등을 활용하여 RE100 실현 지원 예정

<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세부 내용 >

구분	내용
에너지통합플랫폼	에너지 데이터의 수집·활용·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 제고 추진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를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전력과 에너지를 운영할 수 있는 독립 전력망으로 신재생 전원의 간헐적 특성 및 변동성을 보완
암모니아 혼합연소	연소 후에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암모니아 혼합연소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추진
스마트통합안전시스템	스마트통합안전시스템, 드론관제 등을 구축하여 산단 내 각종 정보의 실시간 수집·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상황 즉각 감지 및 선제 대응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0일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추진 중인 공장설립 관련 입지규제 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수렴
- 산업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혁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공장설립 관련 입지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 없는 공장의 신·증설 완화 (1,000㎡ → 2,000㎡) · 국내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공장 설립·운영의 불편사항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부대시설에서 판매가능한 품목에 타사제품과의 융복합 제품 추가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장 착공이 지연된 경우, 공장착공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신탁회사의 산업단지 내 임대업 허용 · 소규모 공장(500㎡)의 관내 이전시 공장변경등록 허용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 등을 도시형 공장에 포함하여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원시설 종류 확대 ·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에 건설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간소화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시행
-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의 일정 범위 내에서 농업 등 법령에서 제외하는 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로, 산단 입주 업종 범위 확대, 미분양 해소, 신산업 육성 및 산업간 융복합 촉진 등을 위해서 도입
 -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 사항에는 지난 7월 개최된 ‘입지구제 개선을 위한 산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된 업계 건의사항 등이 반영

<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거티브 존 신청을 위한 신청 횟수 확대(연 1회 → 4회) ·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완화(전원 동의 → 75% 이상 동의) · 네거티브 존 지정 상한면적 확대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50% 이내) · 네거티브 존 지정 하한면적 축소 (국가산단 30만㎡→15만㎡, 일반산단 5만㎡→2.5만㎡)
업종특례지구 입주업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관련 4개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 * 기계 및 장비 중개업(46106), 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4653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농공단지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산시설 구축이 없어도 추가로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 * 공장 건폐율이 50%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기존 공장의 제조시설 면적 이내로 한정

Ⅱ. 주요 법령 동향

1

산업집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87호, 개정 2022.04.19., 시행 2022.04.20.)

□ 산학융합지구 지정에 적합한 지역의 요건 규정

-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학 교지의 범위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거나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인 대학 교지는 제외(제29조의5제1항)
- 산학융합지구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제29조의5제2항)

1. 소음·진동이 적고 대기환경이 양호하여 교육 및 연구개발시설의 설치에 적합할 것
2. 면적이 1만㎡ 이상인 대학 교지인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을 것

□ 산학융합지구 입주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 설정

- 산학융합지구 입주기업이 산학융합지구 내 교육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배출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장 등은 제외(제29조의5제3항 신설)

□ 개발이익 재투자 등을 위한 별도 회계의 수입·지출 항목 구체화

-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설치·운영해야 하는 별도 회계의 '수입항목'은 개발이익 재투자 회수금, 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 등으로, '지출항목'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한 지출비용, 조사·연구비 등으로 구체화(제58조의5제7항 및 제8항 신설)

2

산업입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25호, 개정 2022.05.03., 시행 2022.05.03.)

□ 실수요산업단지 내 기업 간 협업 촉진

-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실수요산업단지의 경우 산업 시설용지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력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제41조제7항)

3

산업입지법

(법률 제18946호, 개정 2022.06.10., 시행 2022.06.10.)

□ 대학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특례 명시

-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대학 교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 규정에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명확히 규정(제46조의8제1항 전단)
-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 또는 기부에 관한 조건을 명확히 규정(제46조의8제1항 후단 신설)

4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75호, 개정 2022.07.05., 시행 2022.07.05.)

□ 입주업무 권한 위임

-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을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에게 위임(제40조)
-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공장 등의 임대, 임대료의 독촉, 입주관리 요령 공고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제40조)

-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규정
 -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을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창업기업으로 규정(제10조제1항)

작 성 자

- 투자종합상담실 한국산업단지공단 과견관 조정현

KOTRA자료 22-134

산업입지정책동향 (2022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

발행인		유정열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2년 12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화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투자종합상담실 (02-3497-1956)
I S B N		979-11-402-0544-8 (95320)



Copyright © 202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